#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서미화・박지혜・황운하

복기왕 • 이수진 • 이재강

박지원 • 백승아 • 이인영

윤종오 • 정준호 • 윤종군

이성윤 · 정진욱 · 강준현

이기헌 • 오세희 • 김성환

최보윤・김 윤・조계원

이병진 · 김한규 · 김예지

정혜영 • 박정현 • 채현일

의원(2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,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

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(안 제32조제1항제4호)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50조의7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"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"을 "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"으로 한다.

제50조의7제1항 본문 중 "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"을 "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1년 이상"을 "2년 이상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진정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2조(진정의 각하 등) ① 위원	제32조(진정의 각하 등) ①		
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	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		
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(却下)한			
다.	<u>.</u>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<u>발</u>	4 <u>발</u>		
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	<u>생한 날부터 2년 이상</u>		
진정한 경우. 다만, 진정의 원			
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			
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			
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			
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			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	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
제50조의7(진정의 각하에 대한	제50조의7(진정의 각하에 대한		
특례)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	특례) ①		
원인이 된 사실이 <u>발생한 날부</u>			
<u>터 1년 이상</u> 지난 군인권침해	<u>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</u>		
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			
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			
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			

는 제32	조제1항	제4호 논	부문에도
불구하고	이를	각하하?	지 아니
하고 조	사할 수	있다. 다	구만, 진
정을 제	기하기	어려운	사정이
없어진	날부터	1년 이	<u>상</u> 지나
서 진정	한 경우	에는 그	진정을
각하한디	<b>-</b> .		

② ~ ③ (생 략)

<u> 2년 이상</u>
② ~ ③ (현행과 같음)